

상주 ~ 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



구 미 시

상주 ~ 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현재 상주~영천간 민자 고속도로에 도개IC(구미시 도개면)와 군위 분기점(군위읍 수서리) 구간이 예정되어 있으나, 구미 국가산업 확장 단지 및 하이테크밸리(5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 도개IC와 군위분기점 구간이 장거리로 구미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 주민 이용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상주~영천고속도로 도개IC와 군위분기점 사이에 소보(신계)IC를 설치하여 산업생산 물류 수송난 해결 및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이에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군, 사업시행자와 공동 투자에 대하여 구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에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군, 사업시행자 공동투자에 대한 구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사업비 분담 및 사업시행은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2015.02.01 개정)」에 따라 시행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8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4. 내 용

○ 사 업 명 :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 IC 신설공사

○ 사업위치 : 군위군 소보면 일원

○ 추정사업비 : 117억원(공사 107, 보상 10)

□□사업비 분담: 경상북도(14억, 12%), 구미시(20.5억, 17.5%), 군위군(20.5억, 17.5%),

사업시행자(62억, 53%)

(※ 본 사업비는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사업비 분담 세부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지자체			사업시행자	비 고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군		
공사비	IC설치비	70	-	17.5 (25%)	17.5 (25%)	35 (50%)	금액(억원) (비율, %)
	영업시설	17	-	-	-	17 (100%)	
	지방도 이설	20	10 (50%)	-	-	10 (50%)	
	소 계	107	10	17.5	17.5	62	
보상비	IC 신설	6	-	3 (50%)	3 (50%)	-	금액(억원) (비율, %)
	지방도 이설	4	4 (100%)	-	-	-	
	소 계	10	4	3	3	-	
계		117	14	20.5	20.5	62	

○ 개 통 일 : 2017. 6월(본 고속도로와 동시개통 목표)

○ 시 행 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

5. 참 고 사 항

○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상주시 낙동면 유곡리
- 사업기간 : 2012 ~ 2017년(6년간)
- 사업규모 : L = 93.958km, B = 23.4m / 군위구간 31.6km
- 총사업비 : 2조 2,345억원(민간 18,261 건설보조금 2,215 보상비 1,848)
- 추진방식 : BTO방식(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 공사착공 : 2012. 6. 28.
- 공사 진행률(35.2%예정) : 2015.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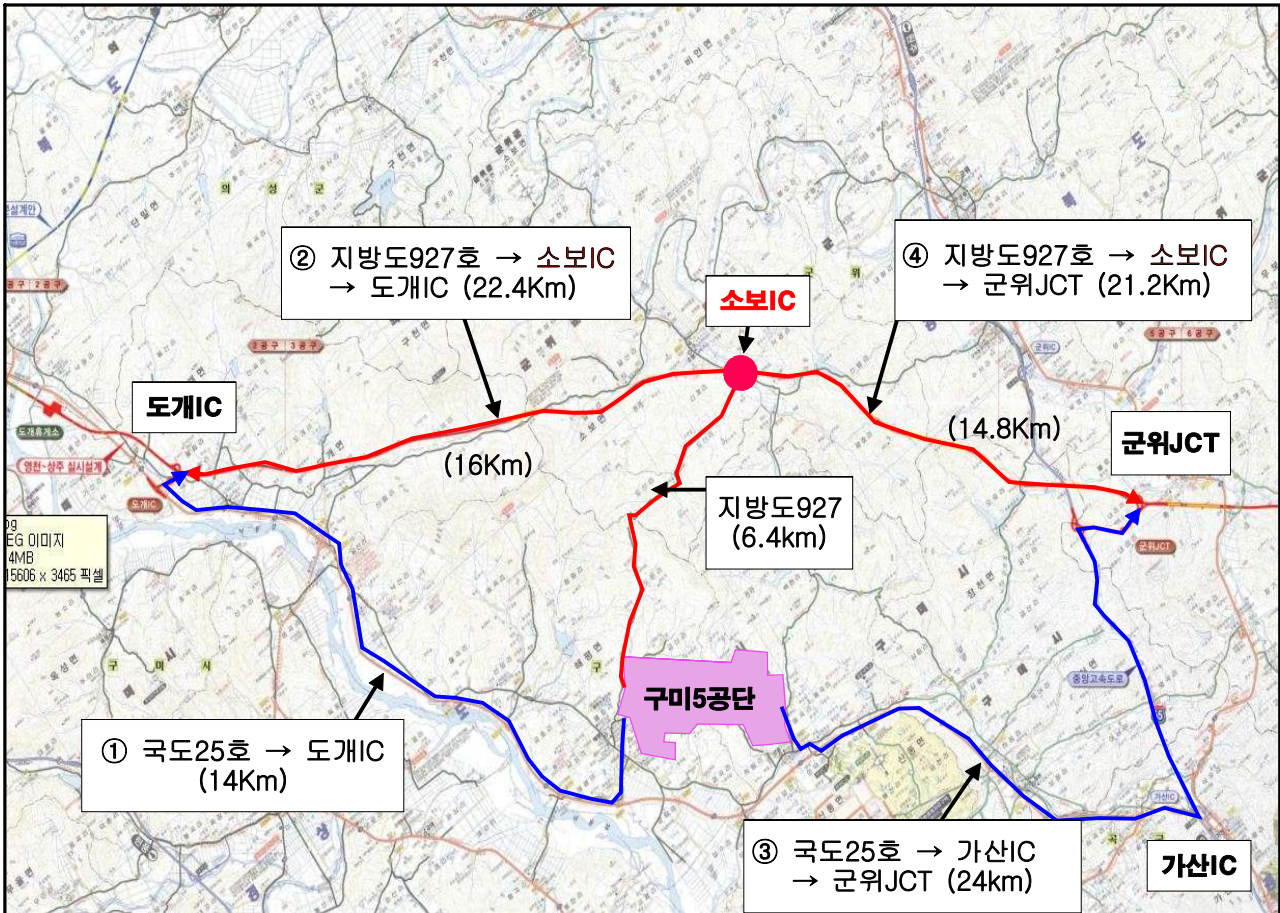
○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추진상황

- 2008.11.04. : 구미 국가산단 제5단지 연결 I.C 건의(구미시)
- 2011.04.29. : 상주영천고속도로 실시계획승인신청에 따른 협의의견
(군위군 → 사업시행자)
- 2013.02.05.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연결도로 및 IC 신설 건의
(경상북도 → 부산청)
- 2014.09.30. : 신계IC 추가 설치 건의 (경상북도 → 부산청)
- 2015.06.18. : 관계기관 합동회의(국토부 주관)
- 2015.09.23. : 사업비 분담금 협약체결 요청(부산청)

○ 기타사항(소보IC 이용가능 차량)

-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차량(하이패스 전용IC)
- 4.5톤 이하 화물차량(과적단속 곤란으로 차량 톤수 제한)

○ 위치도



○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15. 국토교통부)

제9조 (기타 비용부담 등) ① 택지·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이패스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등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요구자가 설치비용(총사업비)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 요구에 따라 하이패스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비용(총사업비)을 부담한다.

1.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하는 하이패스IC는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가 각각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2. 본선에 직접 연결하는 하이패스IC는 한국도로공사가 영업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보상비를 부담하며, 총사업비에서 영업시설 설치비와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가 각각 100분의50씩 부담한다.